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나59799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나597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3가단52160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아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

변론종결 2024. 4. 30.

판결선고 2024. 6.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3가단52160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20,000원 및 그중 15,6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2.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0.부터 각 202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240,000원 및 그중 31,24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2.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한방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E한방병원의 원장이었던 피고와 위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위 병원 영업에 관한 지분의 90%를 피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면서, 2023. 4. 10. 지분 인수대금을 156,174,487원¹⁾으로 하고, 그중 15,620,000원은 2023. 4. 24.까지, 나머지 잔금은 2023. 5. 15.까지 각 납입하기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023. 4. 24. 피고에게 위 15,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한방병원이 소재한 건물(서울 강남구 G 및 같은 구 D)의 임대인인 F 주식회사는 2023. 3. 31.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F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23. 4. 20.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통지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23. 5. 15. 피고에게 E한방병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예정된 점, 강남구보건소장의 E한방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예정 통지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강남구보건소장은 2023. 5. 19.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E한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23. 5. 30.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의료법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E한방병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F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5,620,000원의 배액인 31,24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5,620,000원을 반환할 의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배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한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점(피고도 E한방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은 원고가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E한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E한방병원 소재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3. 5. 22.자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취소되었다[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갑 제8호증(동의서)에 ‘피고와 원고 간의 E한방병원 동업계약 취소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갑 제7호증(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요청’한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의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 취소된 이상 그 합의해지는 논해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계약금을 수령한 2023. 4. 2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거나 달리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E한방병원으로부터 수령하였을 2023. 4. 10.부터 2023. 5. 22.까지의 급여 28,000,000원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수령한 급여 10,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재산상손해로, 5,000,000원을 위자료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강남구보건소장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소송을 통하여 다투으로써 E한방병원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자신의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E한방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임박해 있고,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병원 소재 건물로부터 퇴거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인지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에게 E한방병원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정들을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고지·설명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재산상손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없었다면 원고가 월 20,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E한방병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 즈음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여 월 2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E한방병원으로부터 10,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점, ② 피고의 기망행위는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이어나갈 기회를 상실한 점, ④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E한방병원의 사업자 등 지위가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원고가 E한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고 또한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E한방병원의 봉직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행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23.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20,000원(= 부당이득금 15,62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15,6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2.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0.부터 각 202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현미, 판사 조휴옥

1) 원고와 피고는 E한방병원의 영업권에 관한 가치를 173,527,207원으로 잠정 평가하였는데, 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156,174,487원을 잠정적인 지분 인수대금으로 정한 후, 2023. 7.경 결산을 거쳐 그 인수대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